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09.30 조례 제4683호 개정 2011.09.29 조례 제5173호 개정 2012.12.31 조례 제5427호 개정 2013.08.01 조례 제5542호 개정 2016.07.14 조례 제6282호 개정 2017.01.05 조례 제6386호 개정 2017.09.21 조례 제6650호 개정 2018.01.04 조례 제6741호 개정 2019.01.03 조례 제69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 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1.05.>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개정 2013.08.01.>
-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개정 2011.9.29.>
- 3.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개정 2013.08.01.>
- 4.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개정 2013.08.01.>
- 5.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개정 2013.08.01.>
-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개정 2013.08.01.>
- 7.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3.08.01.>
- 8.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3.08.01.>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4.>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4. 자본금 및 출연금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의 운영
-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8. 예산과 회계
- 9. 정관의 변경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 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1.03.>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09.29.>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01.05.>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01.04.>

-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01.05.>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1.05.>
-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콘텐츠 구매 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 제9조의2(패션·봉제재문위원회)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봉제자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7.09.21.>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17.01.05.>

제11조(기금)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7.01.05.>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6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1.05.>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4683호, 2008.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73호, 201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427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542호, 201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82호, 2016.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86호, 2017.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50호, 2017.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41 2018.0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